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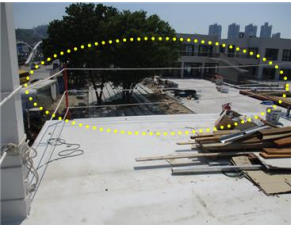
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[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토목공사]

- 점검일시 : 2019.05.23 (목)
- 조치결과
- ◆ 점검자 : 한종수, 박상종

지적내용	점검사진	조치일자	조치사진
		조치내용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서측부지 북측 옹벽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난간은 계단 화강판석 붙임 작업을 위하여 철거되어 화강판석 붙임 작업 근로자 추락 우려가 있으니 작업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작업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</p>		2019.05.27	
		<p>안전난간 설치완료, 작업시 부분철거로 안전작업 실시 교육완료</p>	
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보행육교 서측 상부에 로프로 설치된 접근금지 시설은 점금금지 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단부임을 인지하기 어려우니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 표기 바람</p> <p>- 또한, 교량 상부작업이 없을 시는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고, 추후 상부 데크 설치 등 작업시는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, 제42조(추락의 방지)</p>		<p>2019.05.24</p> <p>접근금지 표기 설치 및 입구 작업관계자의 출입금지 조치함.</p>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보행육교 서측 계단은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으나 난간 고정상태가 미비하여 흔들림이 있고, 안전난간 설치 기준 하중(100kgf)에 못 미치는 상태니 근로자 추락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기준에 맞게 보완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01(안전난간)</p>		<p>2019.05.27</p> <p>기 설치된 계단 안전난간대를 토목 바닥 정리 작업으로 일부 해체중이었으며, 정리 작업 후 상부까지 비계 연결로 인해 난간 고정상태 조치함.</p>	

<p>○ 전도재해 예방</p> <p>- 보행육교 하부 작업용 일자형사다리는 아웃트리거가 없이 고정되어 있으니 아웃트리거가 있는 사다리로 교체하거나 반출하기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구조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5(사다리)</p>		<p>2019.05.24</p> <p>보행육교 작업 완료, 일자형사다리 철거 조치함. 이후 사다리 사용시 아웃트리거 설치 및 안전작업 요실시 하겠음.</p>	 
<p>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</p> <p>- 서측부지 남측 옹벽 상단은 일정 구간이 옹벽 구체와 상단이 일체화 되어있지 않아 상단 콘크리트 낙하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상단 콘크리트 제거 또는 낙하 방지 안전시설을 설치 바람.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</p>		<p>2019.05.28</p> <p>옹벽상단 일체화 및 외,내부 미장 조치 완료</p>	 
<p>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</p> <p>- 서측부지 남측 옹벽 하부에 위치해 있는 위험물보관소는 아래사항을 보완 바람.</p> <p>① 관리책임자 비상연락처 표기</p> <p>② 위험물저장소 통로 확보</p> <p>③ 고압용기 캡 씌워서 보관</p> <p>④ 잠금장치 관리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4(위험물 보관소)</p>		<p>2019.05.27</p> <p>위험물 보관소 관리책임자 비상연락망 표기, 통로 확보, 고압용기 캡조치, 잠금장치 조치 완료.</p>	

<p>○ 건설기계 안전</p> <p>- 가로등 기초설치 작업 중인 굴삭기는 아래사항을 보완 바람.</p> <p>① 중량물 양중시는 후해지 장치 부착 후 양중 작업</p> <p>② 장비실명제 카드 부착</p> <p>③ 장비 운전자는 운전석 이탈시 착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(안전모)를 운전석에 비치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</p> <p>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32(굴삭기)</p>		<p>2019.05.29</p> <p>후해지 장치 부착, 장비실명제 카드 부착, 장비운전자 안전모 착용 조치.</p>	
<p>○ 기타 안전관리</p> <p>- 보행육교 하부 통과차량 제한 높이 표시를 위한 현수막은 고정상태가 미비하여 바람에 날릴 경우 현수막에 표기된 통과높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현수막을 견고히 고정하여 운전자가 인지하기 쉽게 보완 바람.</p>		<p>2019.05.24</p> <p>현수막 조정 상태 완료.</p>	